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7. 1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7월 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7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8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2. 7. 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재 형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2002.6.10 대통령령제17624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직종·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2003년 2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2년 7월 31일 현재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함.(부칙 안 제3조 제2항)
- 직급별 초과현원 : 49명

(단위 : 명)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소계	6	7	8	9	소계	6	7	8	9			10
49	19	0	10	5	4	30	1	1	1	2	25	0	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마포구의 정원감축도 2002년 7월 31일까지 총 정원 1,236명(집행기관 : 1,210명, 구의회사무국 : 26명)으로 완료함으로써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그 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직종·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2002. 6. 10 개정·공포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3항 신설규정에 의하여 2002. 7. 31 현재 결원의 총수범위내의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동 개정조례안중 부칙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2002. 7. 31 현재 마포구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9명에 대하여는 2003. 2. 28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내용임.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마포구의 정원도 지난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20명을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 7. 31까지만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2. 6. 10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49명에 대해서는 2003. 2. 28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본 개정조례안이 2002년 8월 1일까지 공포·시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49명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상 불가피하게 면직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본 회기 중에 개정안 내용대로 의결되어 공포·시행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경과 기한인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초과 현원 49명이 2003년 2월말 까지 감소 안될 경우 그 이후의 계획은?

○ 답변요지(김재형 총무과장) : 계획은 없으나, 행자부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것이며, 서울시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면 각 구별로 다른 여건 및 직종전환 등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음.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49명에 대한 명단은 있는가?

○ 답변요지(김재형 총무과장) : 있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이번 회기에 갑자기 상정된 이유는?

○ 답변요지(김재형 총무과장) : 2002. 6. 10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